#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735

발의연월일: 2022. 10. 4.

발 의 자:허종식・유동수・김교흥

이성만 • 박찬대 • 한병도

전재수 · 박성준 · 이동주

신정훈 의원(10인)

## 제안이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은 도심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정책이 개발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 등 항공 관계 법령이 고정익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을 중심으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산업인 도심항공교통과 그 기체, 버티포트(vertiport, 수직이착륙장)의 설치와 관리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련 시장의 급격한 팽창속도에 따른 지원이 필수적이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며, 도심내 저고도를 비행하는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상 기존 항공운송사업과 달리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

고 보여짐.

이에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아래 도심항공교통의 도입과 확산 등 상용화를 촉진하고, 도심항공교통 기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와 국민 교통 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정책 추진의 타당성, 정책 목적의 명확성, 정책 추진을 통한 예산확보의 용이성, 정책추진체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함(안 제7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심항 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방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심항공교통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

- 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었는 경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도심항공교통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하고,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거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필요한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마.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자 및 시범운용지역 내에서 시 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않도

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14조, 17조, 19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지역을 운영하려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도심항공교 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사.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28조).
-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 되 이에 관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20조).
- 자. 시범운용지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심항공교통회 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차.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 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카.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심 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 하여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및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운 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및 제27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심항공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이용·관리·운영체계를 말한다.
- 2.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 운항하기에 적합한 기기로서 국토교 통부장관이 제6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3. "버티포트"(Vertiport)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이를 위한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

서 제2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 4. "도심항공교통회랑"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의 상공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 다.
- 5.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도심항공교통의 개발·건설·운영·관리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6. "실증사업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과 관련된 기준연구와 시험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7. "시범운용지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및 제도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8. "도심항공교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
    - 1) 정기편 운항: 버티포트와 버티포트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도심형항공기 운항

- 2)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1) 외의 도심형항공기 운항
- 나.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교통흐름 관리, 비행계획 승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이탈 감시 등 교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 버티포트사업: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륙·착륙 및 이를 위한항행,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업무·문화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하여 버티포트의 개발·건설·운영·관리를 하는 사업
- 라.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수색·구조, 의 료·응급후송 등을 하거나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9.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란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를 지원·보 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말한다.
- 10.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3차원 공간정보, 기상정보, 소음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11. "규제특례"란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지역에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18조 및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 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 제2장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 등

- 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2.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 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 설비
  -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

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 대학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9.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6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 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 3.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사항
- 4. 도심항공교통과 타 교통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 6.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 7.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제 9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⑥ 기본계획 및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실시계획 (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행정구역의 도심항공교통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 2. 도심항공교통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3. 도심항공교통 유치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 4. 향후 5년간 중점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 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설치) ①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지역의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4.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지역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 5.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6. 버티포트 개발의 허가 및 버티포트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7. 제19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에 관한 사항
  - 8. 제16조에 따른 시범운용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9. 실증사업구역 또는 시범운용지역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 10. 도심형항공기의 선정에 관한 사항
  - 11.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내 도심항공교통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둔다.
- ④ 시·도지사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도심항공교통업무 관련 지 방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⑤ 특별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도심항공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3. 시 · 도지사 또는 시 ·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
  -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장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12조(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기반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체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계

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제1절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 지역

- 제13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의 운영을 통해 마련된 도심항공교 통의 안전성 검증결과 및 운용과 관련된 기준을 관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 4.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 제14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항공안 전법」,「항공사업법」,「항공사업법」,「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심형항공기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시범운용지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 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지역을 운영하려는 시·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 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지역으로 선정된 시·도지사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 ⑤ 시범운용지역의 지정·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시범운용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 지사는 시범운용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시범운용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시범운용지역에 관한 특례) ① 시범운용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장공사업법」, 「장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심형항공기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버티포트사업을 위한 일단의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하여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 1.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 구역 개발사업
- 3.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 6.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사업
-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9. 「역세권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 1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 ③ 버티포트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

- 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8조(규제신속확인) 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⑥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 운용지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 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

- 을 배제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 또는 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 제2절 버티포트 및 회랑

- 제20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버티포트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 2.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⑥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해당 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 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해당 버티포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 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버티포트 개발허가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개발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5. 버티포트의 위치 · 구조 등이 개발허가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 6. 사정 변경으로 버티포트 개발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제6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21조(버티포트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버티포트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인

-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 4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및 점용·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

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 등의 동의
-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 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 2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 인 또는 신고
-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 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 30.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 3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32.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 3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3조에 따라 버티포트 개발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2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지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시범운용지역의 시·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등

제2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 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 공교통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증사업구역에서의 성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도심항공교 통사업자"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 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⑥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증사업구

역에서의 성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 ·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⑥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1. 제21조에 따른 버티포트 정보

- 2. 제2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 3. 제27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 4. 「공항시설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정 보
- 5. 버티포트 등에 대한 「전파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정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신설・변경 등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절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 제28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시범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2.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운영 사업
  - 3.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갱 신 사업

- 4. 실증사업구역 또는 시범운용지역 조성 사업
-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30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도 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 2.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항공 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⑧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도심 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 제32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5장 벌칙

- 제35조(벌칙)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②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개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32조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과대료) ①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버티포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